

위치	오류유형	수정 전	수정 후
2 201~201p OX문제 번호 : 10	정답	10 ×  (해설) 79% → 85%, 21% → 15% (부가가치세법 제72조 제1항)	10 ○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감면·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세액에 79%를 곱한 세액을 부가가치세로, 21%를 곱한 세액을 지방소비세로 한다. (○) - 부가가치세법 제72조 제1항, 시행 2021. 1. 1.
295~295p 해설 하단	정답	기출예제 답 ②	기출예제 답 ③
2 558~558p OX문제 번호 : 01	문제-분문	직접재료비, 직접노무비, <b>직접제조간접비</b> 는 직접원가에 해당한다. (○)	직접재료비, 직접노무비, <b>직접제조경비</b> 는 직접원가에 해당한다. (○)
상권 918~918p 8.1.2-8.1.3	개념, 공식-설명	8.1.2 보험계약에 기재된 목적지에 도착하기 이전 또는 목적지에서 불문하고 피보험자 또는 그 고용인이 통상의 운송과정이 아닌 보관, 또는 할당 또는 <b>분배</b> 를 위해 선택한 기타의 창고 또는 보관 장소에서 혹은 그 안에서 운송차량이나 기타 운송 <b>용구</b> 로부터 양하가 완료된 때, 또는 <b>8.1.3 피보험자 또는 그 고용인이 통상의 운송과정이 아닌 보관을 위해 운송차량 또는 운송용구나 컨테이너를 사용하기로 선택한 때, 또는</b>  8.1.3 피보험자 또는 그 고용인이 통상의 운송과정이 아닌 보관을 위해 운송차량 또는 운송 <b>용구</b> 나 컨테이너를 사용하기로 선택한 때, 또는	8.1.2 보험계약에 기재된 목적지에 도착하기 이전에 또는 목적지에서, 피보험자 또는 그 고용인이 통상의 운송과정이 아닌 보관 또는 할당 또는 <b>유통</b> 을 위해 사용하기로 선택한 다른 창고 또는 보관장소에서 운송차량 또는 다른 운송 <b>수단</b> 으로부터 양하가 완료된 때, 또는  <b>(중복 텍스트 삭제)</b>  8.1.3 피보험자 또는 그 고용인이 통상의 운송과정이 아닌 보관을 위해 운송차량 또는 다른 운송 <b>수단</b> 또는 컨테이너를 사용하기로 선택한 때, 또는
		수정 사유	중복텍스트 삭제, 좀더 매끄러운 해석표현

도서의 오류로 학습에 불편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.  
더 나은 도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대교육그룹이 되겠습니다.